

자산보관.관리보고서

신탁업자: 국민은행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
삼성글로벌파이낸셜서비스증권투자신탁
제 1 호[주식]

나.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

다.보관.관리기간:12.03.03 ~ 13.03.02

라.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
마.투자매매업자.투자중개업자:

동양증권 삼성증권 동부증권 키움증권
토리스투자증권 LIG 투자증권 기업은행
HSBC 은행 금호종합금융 한화생명 삼성생명
신한금융투자 이트레이드증권 우리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12.08.22	법개정반영	-	투자운용인력 변경 시 운용경력
13.02.28	해외위탁집합 투자업자 변경	삼성자산운용 싱가포르 유한공사	삼성자산운용 홍콩 유한공사
13.02.28	반대수익자의 수익매수청구권 행사 사유 추가	-	모자형 변경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
13.02.28	펀드보고서 발송매체	판매회사	판매회사 또는 예탁원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일자	변경사유	성명	주요운용 경력 및 이력	협회등록번호
12.08.22	말소	임창규	-	2109000219
12.08.22	신규	홍의석	-	2109000346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

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.교체.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없음

7. 법 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: 적합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: 적정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: 해당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: 공정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 : 적정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: 적정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: 해당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: 해당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며 이 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